

copyright

특허 분쟁 해결의 선진화 방안

특허분쟁 사법조정, 전문성 갖춘 변리사 참여해야

지적재산은 반복 이용하는 가치 정보를 다수 단위의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는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다. 이 글도 역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정보이다. 왜냐하면 이는 반복적인 가치의 매체로서 저작권, 디자인 및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원적 구조의 국내 특허분쟁

특히, 국내의 특허분쟁은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2원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당사자가 특허청의 특허결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 특허심판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특허 심판에 대한 불복절차는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둘째는 이와 달리 일반법원이 통상의 불법행위와 같이 특허침해소송의 일반민사사건으로 다룰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법원은 특허침해소송의 1심 법원이 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글_정영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oajung@gmail.com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고등법원의 항소심, 그리고 특허법원 및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현행 특허분쟁 해결방식의 맹점

1980년대 말 이래 한국의 정치민주화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이 폭증한 까닭으로 민사사건도 양적으로 폭증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70~80%가 소액사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판구조 하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은 특허의 보호범위와 신기술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연구비(R&D)와 신제품의 경제성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나 개인이 방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때문에 현행 특허분쟁의 해결방식으로는 고부가가치의 지적재산을 창출하더라도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신속한 손실 회복 또는 침해 금지의 보전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분쟁해결의 선진화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허심판원이 특허심판청구의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심판기간이 2010년에 9.9월에서 2011년 9.5월로 단축됐으나 상당한 심판기간이 소요된다. 사실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에 대한 심판취소소송의 제소율은 17.0%(2007~2012년), 또 특허심결 취소비율은 22.7%이다. 더구나 특허무효심판과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리기간이 특허심판원 10.04개월, 특허법원 9.52개월, 대법원 11.99개월로 비교된다. 따라서 특허소송의 개선방안은 특허심판원과 일반법원, 특허법원 및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절차를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허심판 및 특허법원 취소소송의 문제

특허법원은 심판소(1심), 항고심판소(2심)의 소송담당에 대해 위헌의 논의가 제기되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의 전속관할법원으로 설립되었다.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실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중자산업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결의 취소소송을 사물관할로 정하고 있다.

실제 특허법원의 미제사건은 2009년 49.9%, 2010년 56.9%, 2011년 41.1%로 매우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또 심결취소판결도 2009년 29.4%, 2010년 26.8%, 2011년 27.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상고심의 비율이 2009년 44.3%, 2010년 38.9%, 2011년 41.1%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율이 높은 원인은 특허의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발명의 개념이나 '진보성' 또는 '신규성' 등 법적 쟁점에 대한 법적용과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다투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특허법원이 제도로서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율이 39.3%이고, 상고율이 58.7%, 불상고율 2%로 집계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허법원에 기술전문법관의 배치가 절실할 뿐만 아니라,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법원연계형 조정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

다. 이 문제는 일반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 조정제도의 도입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장기간 소요되는 특허침해소송 문제

2000~2009년까지 국내 특허권(실용실안권 포함) 침해 민사소송 현황은 민사본안사건 413건, 가처분사건 235건으로 총 648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허침해소송의 본안사건 제소비용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유의미한 통계지표라고 본다. 이 글은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침해소송의 사건 비율과 법원별 심리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관할법원의 특허침해 민사본안소송 현황: 2000~2009

관할법원	사건수	비율
서울	중앙(213), 남부(30), 서부(6), 동부(13), 북부(7)	269(65.1%)
수도권	인천(22), 수원(38), 의정부(10)	70(16.9%)
중부권	대전(14), 청주(8)	22(5.3%)
남부권	부산(9), 대구(26), 울산(10), 창원(4), 광주(7)	53(12.8%)

자료: 특허청(2010) 재구성

우선, 서울 및 수도권 관할 법원이 전체 특허침해소송사건의 83.1%를 점하고, 나머지 16.9%는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으로 대별되고 있다. 특허침해사건이 이처럼 수도권 법원에 집중된 이유는 기업(개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특허침해소송의 심리기간은 사안별 및 법원별로 각기 14개월부터 36개월까지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연구개발비와 연구기간의 소요가 관건임에도 특허침해소송의 심리기간이 1~3년 이상이 소요된다면 현재와 같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경쟁 하에서 어떠한 기업도 기술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일지라도 기술혁신을 위해 투입하는 방대한 R&D 비용과 장기간의 연구시간이 소요되는데, 다른 경쟁기업이 침해하는 해당 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1심 판결의 선고도 장기간 지연된다. 이런 현실을 감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존재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특허침해소송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승소(전부 또는 일부 승소) 비율이 26%이고, 패소율이 74%로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방법원의 항소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의 항소율이 84.5% (원고 승소율 15.3%)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체 항소심의 심리기간은 점차 단축되어서 10개월 이내로 집계되었다. 나아가 항소심의 판결에 있어서 원고의 승소율은 22.9%, 패소율이 62.0%이고, 또한 특허법원의 원고 패소율도 70%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특허분쟁의 중요한 문제점은 원고 패소율이 이례적으로 높고, 또한 그 심리기간이 통상의 민사사건의 심리기간보다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허분쟁해결에 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허분쟁에 대한 사법조정 도입방안

현재의 창조경제의 구현은 더 많은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제기되는 특허분쟁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에 쇄도하는 민사소송을 재판만으로 고집하는 것은 21세기 사법 정의와 새로운 사법 모델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법관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는 과거의 규문주의형의 협의의 사법정의와, 사회와 개인의 윤리가치의 변화를 반영하는 광의의 사법정의 중에서 대부분 OECD 국가는 후자의 사법정의를 운용하고 있다. 후자가 전자와 달리 현대법치국가의 정의 관념에 보다 부합하므로 법원의 판결 이외의 대체적인 사법조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는 전면개정 ‘변리사법’에 반드시 변리사의 사법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는 것이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법문화는 실질적으로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을 회피하지만, 역으로 당사자가 소송에 빠지면 악감정을 토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행 민사조정제도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에도 법관의 선호에 의존하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민사조정은 당사자와 법원 및 법률가 모두에게 다수의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모두에게 근원적이고 최종적으로 분쟁의 조기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조정은 소송에 비해서 1/10 정도의 저렴한 비용과 상소하지 않음으로 최소의 사법거래비용이 든다. 셋째, 당사자가 조정절차를 쉽게 이용하고 또 엄격한 법적용에서 해방될 수 있다. 넷째, 당사자의 영합 게임이 아니라 최선의 판결보다 유리한 결론에 이른다. 다섯째, 민사조정은 현대 기업의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비공개의 분쟁해결로 기업의 명성에도 유리하다. 신기술 특허와 관련된 국제적인 특허소송도 일차적으로 민사조정제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면 기업(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동시에 특허 기업 간의 전략적 기술 제휴도 촉진하는 방안이다.

입법적 개선으로 특허분쟁 신속성 담보돼야

오늘날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은 자체의 역량에 맡겨져 있지만, 신속한 특허분쟁의 해결은 입법적 개선에 의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허심판과 특허분쟁의 심리기간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원고의 낮은 승소율과 높은 항소(상고)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결국 특허분쟁의 선진화방안은 법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종래의 법문화를 시정하되, 동시에 급증하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의 취소소송 및 일반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의 판결에 대해 높은 항소(상고)율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한 차선책은 변리사가 특허분쟁의 사법조정에 참여하여 전문성에 기초하여 당사자와 법원을 설득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